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세 아동 지문등록 의무화〉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5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우재준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1. 18.
3.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 수준에 그쳐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 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함.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을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매년 아동의 실종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 미해결 사건이 있음.

이에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 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생략)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지문등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1의3. ~ 4. (생략)	제7조의4(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1세가 된 해에 경찰청장에게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문 정보 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현행 제7조의4와 같음) 제18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7조의5----- ----- ----- 1의3. ~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¹⁾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함)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이 파악한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이 등록된 건수는 2024년 8월말 기준 전체 707만 7,206명 중 482만 3,498명으로 68.2% 수준이며,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종 당시 아이 연령은 3~5세가 53.5%로 가장 많았고 6~8세가 30.4%로 8세 미만 저연령 아동의 실종률이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실종될 경우 골든타임 내 신원확인 어렵게 되어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신원파악이 어려운 저연령 아동에 대해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저연령 아동의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할 때 실종아동 발견 이후 인적사항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지문등정보의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실종아동등 연령대별 발생 현황 >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20년	19,146	134	48	74	165	234	279	475	409	365	409	419	584	1,361	2,692	3,427	2,984	2,759	2,328
'21년	21,379	125	50	57	127	157	242	407	389	362	429	471	687	1,491	3,143	4,003	3,565	3,120	2,554
'22년	26,416	118	49	102	165	219	244	488	456	379	479	627	1,125	1,919	3,680	5,213	4,306	3,728	3,119
'23년	25,628	138	50	92	147	196	247	477	452	404	407	512	896	2,035	3,642	4,759	4,593	3,599	2,982
'24년 11월	23,785	97	41	60	100	164	232	410	382	402	411	454	818	1,813	3,833	4,511	3,979	3,444	2,634

* 자료: 경찰청

<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

구분	접수	해제	미해제
'20년	19,146	19,054	4
'21년	21,379	21,257	2
'22년	26,416	26,357	9
'23년	25,628	25,516	7
'24년 11월	23,785	23,696	72

* 자료: 경찰청

< 아동의 지문등정보 등록건수 >

나이	저연령 아동(0세~10세)	11세 이상 아동
등록건수	5,524,220	126,088
등록률	78.05%	21.95%

* 자료: 경찰청('24.11.30. 기준)

다만, 1세 아동의 지문등정보 의무등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지문은 신체의 성장등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생체정보이며 민감정보²⁾로서 한번 유출될 경우 피해복구가 매우 어려우므로 수집 및 관리 과정에서 특별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저연령 아동의 손가락 크기와 지문 패턴이 발달하지 않아 지문 인식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기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³⁾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3) 아시아투데이, '모바일 지문식별' 미등록 아동 30%...“8세 미만 의무화해야” (2024.10.29.)

셋째, 사전등록하는 ‘지문등정보4)’는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광범위한 정보를 담도록 위임⁵⁾되어 있어 1세부터 지문등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넷째, 현재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지문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제7조의3), 유전자 검사(제11조)를 통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 점을 등 을 법안 심사 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문이 민감한 생체 인식정보이며 피해복구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 자율적 사전 신고제가 시행(등록률 60%대) 중이므로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을 통해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1세 아동의 의무적 지문등록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4)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2.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④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은 지문이 일신전속적 생체정보로서 신중하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어 의무 등록 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현행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 위험이 높은 10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이 78.05%에 달하는 등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화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발적 등록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44